

중국 회사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회사 등록자본금 제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중국 회사법 개정안이 2013년 12월 28일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개정 중국 회사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중국 회사법이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2월 19일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수정 관련 결정(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을 신규 반포하고,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 당사자의 출자에 관한 몇 가지 규정(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 등 2개의 법규를 폐지하는 한편, 〈회사등기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및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 등 8개의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2월 2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회사등록자본금등기 관리규정(公司注册资本登记管理条例)〉을 개정하는 한편 최고인민법원도 〈회사법 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수정 결정(关于修改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을 개정하였습니다(이하 총칭하여 “추가 입법조치”). 추가 입법조치에 따라 개정 중국 회사법의 회사 등록자본금 등기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입니다.

추가 입법조치에 따른 이상의 법규들은 모두 개정 중국 회사법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는 개정 중국 회사법의 적용에 따른 한국기업의 시사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정에 따른 시사점

개 정 사 항	시사점
실제납입등기제도(实缴登记制)에서 약정납입등기제도(认缴登记制)로의 변경·완화	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은 더 이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회사등기정보를 통해서 거래상대방인 중국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실제납입등기제도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상업은행, 외자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회사,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할부리스회사, 소액대출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외자보험회사, 직관회사, 노무과견회사 등 27개 업종의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가 계속 적용됨.
등록자본금 최저한도 제한 폐지	• 등록자본금 최저한도 제한 폐지로 기술집약적인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임. •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서 별도로 등록자본금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업종은 여전히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
등록자본금 중 현금 출자비율 제한 및 출자 자산에 대한 강제평가제도 폐지	• 등록자본금 전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출자 자산에 대한 강제평가제도도 폐지됨에 따라 무형자산 등 현물을 이용한 법인설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 반면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부실기업의 난립 가능성도 높아져 중국기업과 거래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비율 및 납입 비율 및 기한 제한 폐지	• 출자자가 자유롭게 등록자본금 납입방식 및 일정을 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연한 법인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 단, 출자자는 회사 정관에서 등록자본금의 분할 납입 시기, 방식,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함.

2.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자본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회사법 및 추가 입법조치에 따라 법 규정상으로는 향후 중국 내에서 등록자본금이 1위안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토지 사용 및 외환 등과 관련한 기타 규정상의 제한으로 인해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제조업, 물류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토지를 신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업은 토지 사용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최소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이러한 최소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총액을 해당 법규에 부합하도록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의 비율제한 규정에 따라 투자총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의 비율제한 규정은 중국 내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사항인데, 중국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개정과 무관하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 해외차입을 위한 등록자본금 납입 필요성 존재

현행 외환 관리 법규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투자총액에서 등록자본금을 차감한 금액 이고, 실제 해외차입을 할 경우 정관상에 규정된 등록자본금 중 실제로 납입한 비율만큼만 차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개정 회사법 및 추가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등록자본금을 납입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최용원 변호사 [북경사무소] | TEL. +86 10 8447 5343 | E-Mail. ywchoi@shinkim.com |
| ● 원중재 변호사 [상해사무소] | TEL. +86 21 6235 0411 | E-Mail. jjwon@shinkim.com |
|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 TEL. +82 2 316 4201 | E-Mail. tszheng@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